

등록번호	자동차정책과-463
등록일자	2009. 06. 24
결재일자	2009. 06. 24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행정사무관	과장	단장
성열산	지희진	전결 06/24 <b>박종흠</b>
협조자		

<h2>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안)</h2>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중요
	민원·갈등 가능성	보통
	기관간 이견 가능성	보통
	홍보 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높음 (높음)
	서민생활 관련성	높음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09.7.1 시행)에 따라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도록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자동차업계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자 합니다(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009.6

자동차정책기획단  
자동차정책과

## □ 개정이유

- 당초 금년 7월부터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공표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차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국토부 지침(자동차팀-1898, '07.6.5 제정)
- 최근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감안,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함
  - ※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총리 주재, '09.5.27)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과제로 확정

## □ 개정내용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 조직개편으로 인한 용어 정비

## □ 향후계획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 : '09.6
- ※ 첨부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1.~2.1. (생략)	1.~2.1. (현행과 같음)
2.2 “신규제작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 이 고시한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제원관리 번호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말한다.	2.2 ----- ----- ----- <u>국토해양부장관</u> ----- ----- ----- ----- -----.
2.3.~5.3. (생략)	2.3.~5.3. (현행과 같음)
6.1 <u>건설교통부장관</u> 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직접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1 <u>국토해양부장관</u> ----- ----- ----- ----- ----- -----.
6.2 <u>건설교통부장관</u> 은 권고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2 <u>국토해양부장관</u> ----- -----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관리기준 시행

이 관리기준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생산한 신규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관리기준 시행

이 관리기준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생산한 신규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적용대상 차종

- 기준적용일 이후 새롭게 제작·출시된 국내 승용자동차

\*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단위 :  $\mu\text{g}/\text{m}^3$ )

구 분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기준치	250	30	1,000	870	1,600	300

□ 권고기준 준수 확인

- 2년마다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
  - 필요시 자동차 제작사에게 자료 등의 제출 요청 가능

- 권고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권고기준 초과시 자동차 제작사에게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가능